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후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주거안정 및 의료·안전·일상 돌봄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함에 따라, 이러한 고령인구의 주거·생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보다 완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제1호 본문 중 “민간임대주택단지:”를 “민간임대주택단지(다만,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의2(임대료) 법 제44조제2 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증액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 다.	제34조의2(임대료)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100세대 이상 <u>민간임대주택</u> <u>단지</u> :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, 광 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또는 특 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, 주거 시설 유지·보수 및 기타 주 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. 다만, 임 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 · 군 · 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 · 군 · 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	1. ----- <u>민간임대주택</u> <u>단지(다만, 20년 이상 임대할</u> <u>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</u> <u>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109